

[별표 1]

**행정처분기준**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,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 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 니할 수 있다.
- 마.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,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  - 1)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개인투자조합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22조제 1항제1호	등록취소		
2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22조제 1항제2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3.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	법 제22조제	경고 또는	업무정지	등록취소

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1항제3호	시정명령	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
4.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제4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5.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제5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6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제6호			
가.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나.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다.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라.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,	등록취소

<p>마.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 수하지 아니한 경우</p>	<p>경고 또는 시정명령</p>	<p>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</p>	<p>등록취소</p>
<p>바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</p>	<p>경고 또는 시정명령</p>	<p>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</p>	<p>등록취소</p>
<p>사.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</p>	<p>경고 또는 시정명령</p>	<p>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</p>	<p>등록취소</p>
<p>아.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</p>	<p>경고 또는 시정명령</p>	<p>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</p>	<p>등록취소</p>
<p>자.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</p>	<p>경고 또는 시정명령</p>	<p>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</p>	<p>등록취소</p>
<p>차.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</p>	<p>경고 또는 시정명령</p>	<p>지원중단 업무정지 명령 6개월, 시정명령 또는</p>	<p>등록취소</p>
<p>카.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</p>	<p>경고 또는</p>	<p>지원중단 업무정지</p>	<p>등록취소</p>



10.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	법 제22조제1항제10호	시정명령	지원중단 등록취소
11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	법 제22조제1항제11호	경고 또는 지원중단	등록취소

나. 업무집행조합원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2.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3.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4.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5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			
가.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
나.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
다.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
라.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
마.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
바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
사.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
아.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
자.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시정명령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	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
		시정명령	시정명령

차.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카.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타.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파.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하.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6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·운용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7.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8.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
9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	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	경고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	업무정지 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다. 업무집행조합원(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)의 임직원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
2.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
3.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
4.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
5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			
가.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나.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다.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

라.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	직무정지 3개월	해임 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마.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바.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사.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아.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자.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차.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카.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타.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파.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
하.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	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6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·운용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조 제1항제7호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7.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조 제1항제8호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
8.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조 제1항제9호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
9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	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조 제1항제11호	경고	직무정지 3개월	직무정지 6개월, 면직 또는 해임